

# 특 허 법 원

## 제 4 부

## 판 결

사 건 2012허8225 등록무효(상)

원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진호

피 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등록번호 제26443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을 각하한다.
2. 특허심판원이 2012. 8. 7. 2011당32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 26443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제1항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2. 8. 7. 2011당32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6443호/2007. 7. 16./2009. 2. 9./2009. 2. 10.

(2) 구성 : **소녀시대**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0952호/2007. 7. 4./2008. 6. 23.

(나) 구성 : **소녀시대**

(다) 사용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CD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카세트레코더, DVD플레이어, 녹음재생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만화영화

(라) 사용자 :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0953호/2007. 7. 4./2008. 6. 23.

(나) 구성 : 소녀시대

(다) 사용상품 : 별지 3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3) 선사용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0954호/2007. 7. 4./2008. 6. 23.

(나) 구성 : 少女時代

(다) 사용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CD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카세트레코더, DVD플레이어, 녹음재생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만화영화

(라) 사용자 : 피고

(4) 선사용상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0955호/2007. 7. 4./2008. 6. 23.

(나) 구성 : 少女時代

(다) 사용상품 : 별지 3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 다. 선사용서비스표

- (1) 구성 : 소녀시대
- (2) 사용서비스업 :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 (3) 사용자 : 피고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1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3287호로 심리한 후 2012. 8. 7.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수요자에게 피고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피고와 9인조 여성그룹인 '소녀시대'를 동일체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소녀시대'가 가수로서 유명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및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피고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피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피고 또는 피고와 관련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3. 2. 28.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말소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포기로 인해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 가. 판단 기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 인식된 것인지 여부

#####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1, 20 내지 24, 32 내지 37, 44, 45,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이래 음반의 제작·유통·판매업, 연예대행업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로서 소속 연예인으로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있는데, '소녀시대'는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이다.

2) 피고는 그 소속 남성그룹인 '슈퍼주니어'의 성공을 계기로 여성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9명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가창과 안무를 가르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07. 7. 6.부터 위 구성원들을 한 명씩 인터넷 UCC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2007. 7. 16. 위 구성원들 전체의 단체 영상을 공개하였고, 2007. 8. 2. 위 '소녀시대'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다시 만난 세계'를 제작·판매하였는데, 위 '소녀시대'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는 2007. 8. 27.부터 2007. 9. 2.까지 1주일간 집계된 방송 횟수에서 총 247회로 1위, 네이버 가수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07. 10. 11.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 신인 가수 싱글 앨범 판매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1. 위 '소녀시대'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소녀시대'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소녀시대'는 2007. 11. 25.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송'에 선정되었고, 그 후속곡인 'Kissing You'도 각종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위 '소녀시대' 앨범과 2008. 3. 13.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인 'Baby Baby'의 음반 판매량 합계가 12만 장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위 '소녀시대'는 데뷔 1년 만에 음반 판매량 10만 장을 넘긴 첫 번째 여성 가수가 되었다.

4) 피고는 2009. 1. 5. 위 '소녀시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Gee'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Gee'는 공개된 지 2일 만에 엠넷, 멜론, 도시락 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위 'Gee' 앨범은 10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판매된 것을 비롯하여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으로 120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도 35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라디오, 지상파, 케이블을 합한 총 방송 횟수가 1,536회에 이르렀다.

5) 피고는 위 2)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총 4장의 음반(이하 '소녀시대 음반들'이라 한다)을 제작·판매하였고, 소녀시대 음반들의 총 판매량과 연간 판매 순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소녀시대 음반들의 전면에는 공통적으로 '소녀시대' 또는 그 영문 명칭인 'Girls' Generation'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와 함께 '소녀시대', 'Baby Baby', 'Gee' 등과 같은 타이틀곡 제목과 구성원들의 사진 등도 표시되어 있다.

분류	음반명	발매일	연간 순위	총 판매량
싱글 1집	다시 만난 세계	2007. 8. 2.	9위	51,416
정규 1집	소녀시대	2007. 11. 1.	7위	112,996
리팩 1집	Baby Baby	2008. 3. 13.	14위	82,909
미니 1집	Gee	2009. 1. 5.	1위	113,249

6) 위 '소녀시대'는 2007년에 제2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신인상 및 인기상,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 신세대 신인가수상, 제5회 외신홍보상,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신인가수상, 아시아모델상시상식 가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도 Mnet 20s Choice 스위트 뮤직부문상, 제15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그룹가수상,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아 최고가수상, 제17회 서울가요대상 신인상, 하이원뮤직상 등을 수상하였



으며, 위 '소녀시대'와 관련된 기사가 신문이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7) 위 '소녀시대'는 2007. 7.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소녀시대 음반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음악 공연 활동을 해 왔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Mnet의 '소녀 학교에 가다'(2007. 7. 27.부터 2007. 9. 21.까지), MTV의 'MTV 소녀시대'(2007. 9. 27.부터 2007. 11. 1.까지), MBC의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시즌2'(2008. 4. 5.부터 2008. 7. 5.까지), Mnet의 '소녀시대 팩토리 걸'(2008. 10. 8.부터 2008. 12. 17.까지) 등이 있다.

8) 위 '소녀시대'는 위와 같은 음악 공연 및 방송 출연 활동에서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엘리트 학생복', '엘레쎬', '굽네치킨', '썸키스트', 'Viliv', '애니콜',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이 있다.

#### (나) 평가

선사용상표('소녀시대', '少女時代') 및 선사용서비스표('소녀시대')는 모두 '소녀시대'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것으로서 위 '소녀시대'가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이래 음반의 제작·유통·판매업, 연예대행업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로서 위 9인조 여성그룹인 '소녀시대'의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가창과 안무를 가르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가수로 데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데뷔 이후에도 위 '소녀시대'의 각종 음악 공연 활동, 방송 출연 활동, 광고 모델 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기

획하고 관리해 온 점, ② 소녀시대 음반들과 관련한 기획, 선곡, 편집, 제작, 판매 등 대부분의 사항이 피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녀시대 음반들은 특정 작사가, 작곡가, 가수의 '저작물'이라는 성격보다는 위 음반들의 제작·판매를 주도한 피고의 '기획상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소녀시대 음반들을 제작·판매해 왔는데, 위 음반들의 전면에는 공통적으로 '소녀시대' 또는 그 영문 명칭인 'Girls' Generation'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칭이 위 음반들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앞서 본 소녀시대 음반들의 판매기간이나 판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반들의 수요자들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음반의 제작·판매 활동과 아울러 위 '소녀시대'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 공연 및 방송 출연 활동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녀시대'와 동일하게 호칭되고 인식되는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2009. 2. 9.) 당시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소녀시대'와 같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소녀시대', '少女時代', '소녀

시대'와 같은바, 이들 표장은 글자체의 차이, 한글과 한자의 차이 등으로 외관은 동일하지 않으나, 모두 '소녀시대'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1, 11, 20 내지 24, 32 내지 37, 44, 45,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면제 코트' 등과 같은 의류, '고무제 완구' 등과 같은 놀이용구, '냉동된 완두콩, 식용 메밀가루, 미가공 두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청주' 등과 같은 식음료 제품들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음반, 음원'과 대비할 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다르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별로 없어 양 상품이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관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완구판매대행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인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대비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다르고,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별로 없어 양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관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 '소녀시대'가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및 서비스를 피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광고 모델은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

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사정은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녀시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들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을 뿐이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단순히 특정인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주지·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들 상품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건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이종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이  현

                 판사      이다우

[별지 1]

**지정서비스업의 표시(2013. 2. 28. 출원포기된 것)**

간행물광고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배너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 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사진복사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그림물감 소매업, 액자 소매업, 전자응용기기/컴퓨터 소프트웨어/전자관 소매업, 연예인매니저업. 끝.

[별지 2]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표시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면제 코트, 스노우보드용 슈트, 신사복, 아동복, 오버롤(Overalls), 테니스반바지, 겹옷, 골프바지, 골프복, 골프용 잠바, 가면무도회복, 가죽제 바지, 데님제 코트,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아노락(Anorak)(운동용은 제외), 의사용 가운, 청바지, 콤비, 테니스복, 교복, 낚시복, 말한용 바지, 스노우보드 재킷, 스모킹재킷, 스케이트보드복, 오버트라우저, 테니스용 스커트, 파카(Parkas), 남성정장, 반코트, 머뮤다 쇼츠, 스포츠외투, 케이프(Cape), 투피스, 피혁제 드레스, 레인코트, 방수용 재킷, 숙녀용 슈트, 스케이트보드 바지, 웨딩드레스, 인라인스케이트복, 털재킷, 롱재킷, 무용복, 발레복, 스모크(Smocks), 유아복, 종이옷, 골프용 스커트, 모닝코트, 모피제 의류, 스키복, 유아용 바지, 작업복, 작업용 유니폼, 재킷, 코트, 사과리, 스노보드복, 인조가죽옷, 채저블(Chasubles), 가죽제 슈트, 기성복, 롱코트, 망토, 스케이트복, 어부용 재킷, 예복, 이브닝드레스, 작업용 오버롤, 트렌치코트, 팬츠, 낚시용 바지, 등산복, 블루존(Blouson), 스키 재킷, 양복바지, 턱시도(Tuxedo), 튜닉(Tunic), 낚시용 재킷, 반바지, 사이클복, 커버롤, 가죽옷, 가죽팬츠, 더스트코트, 스노우보드 바지, 트윈 세트, 간호사용 가운, 개머던제 옷, 기모노, 모직재킷, 바람막이용 조끼, 방한복, 사리(Saris), 스웨이드 재킷, 스키용 바지, 스포츠재킷, 웨딩가운, 윈드코트, 그레이트코트, 등산바지, 바람막이 재킷, 방한재킷, 블레이저, 슈트, 스커트정장, 슬랙스(Slacks), 오버코트, 잠바[접퍼], 펠리스(Pelisses), 프록(Frocks), 헤비재킷, 드레스, 드레스슈트, 리버리(Liveries), 숙녀용 바지, 스커트, 신생아용 옷, 여성용 예복, 원피스, 탑코트, 토가(Togas), 배자, 마고자, 동정, 한복속옷, 저고리, 한복, 두루마기, 한복바지, 한복치마,

니트웨어, 블라우스, 여성 수영복, 니트 속옷, 반팔셔츠, 속바지, 속셔츠, 수영팬츠, 의류용 칼라, 짜거나 뜬 속옷, 코르셋(속옷), 해변용 의류, 거들, 네글리제, 바디스, 박셔츠, 속팬티, 스웨트셔츠, 슬립(속옷), 운동용 유니폼, 조끼, 파자마, 팬티, 골프용 조끼, 나이트가운, 땀복, 반팔 또는 긴팔 셔츠, 셔츠요크, 슈트용 셔츠, 와이셔츠, 저지(Jerseys), 티셔츠, 스포츠용 저지, 콤비네이션내의, 농구팬츠, 보디스[코르셋], 슈미즈, 워밍업용 운동복, 칼라보호대(Collar protectors), 골프셔츠, 낚시용 조끼, 드레스가운, 레슬링복, 리어타드, 베이비돌파자마, 비치웨어, 오픈넥셔츠, 가운, 남성용 수영복, 마라톤복, 배구복, 긴팔셔츠, 남방셔츠, 셔츠요크, 슈미젯(Chemisettes), 체조복, 코슬렛(Corselets), 폴로셔츠, 어깨끈 없는 브래지어, 트레이닝복, 트레이닝슈트, 풀오버(Pullover), 니커, 드레스셔츠, 등산용 조끼, 목욕가운, 브래지어, 속내의[속옷], 탱크탑, 트랙슈트, 피켓셔츠, 롬퍼즈, 샤워캡, 수영복, 스웨터, 짧은소매 스포츠셔츠, 카디건, 칼라, 팬티스타킹, 페티코트(Petticoats), 농구복, 런닝복, 메리야스제품, 배드민턴복, 보디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칼라커프스, 런닝셔츠, 분리형 칼라, 소매없는 저지, 조깅슈트, 드레싱가운, 땀흡수내의, 만틸라(Mantillas), 셔츠, 셔츠프런트, 속치마, 여성용 속옷, 잠옷, 조깅 팬츠, 짧은조끼, 케미솔(Chamisoles), 내의[속옷], 수영모자, 테디(Teddies), 유니타드, 커프스, 트리코제 파자마, 파레우, 버선, 서라피(Serapes), 여성용 모피 목도리, 운동용 스타킹, 의류용 소맷부리, 수녀용 머리수건, 실크스카프, 양복 장식용 손수건(Pocket squares), 나비넥타이, 수대(手帶), 스톨(Stoles), 의류용 호주머니, 각반(脚絆), 숄더랩(Shoulder wraps), 애스콧타이(Ascots), 의복용 장갑, 모피 머프, 버선커버, 손목밴드, 스카프, 양말커버, 래그워머, 양모양말, 트리코제 솔, 남성양말, 병어리장갑, 비종이제 턱받이, 스웨트밴드, 스타킹, 머리띠{의복}, 모피스톨, 반다나(Bandan



a)[목도리], 발목양말, 솔 및 스톨, 베일(의복), 솔, 파레오, 헤드스카프(의복), 넥타이, 머프(Muffs), 목도리, 발싸개, 수면 안대[수면용 눈가리개], 의류용 장식띠, 기성복안감, 보아(모피목도리), 에이프런, 방한용 귀마개,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양말, 직물제 기저귀, 레깅스(Leggings),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네커치프, 발한방지양말, 방한용 장갑, 스타킹뒷꿈치를 덧댄 부분, 땀흡수 스타킹, 숄더스카프, 옷커버, 크라바트, 타이츠(Tights), 펠러린(Pelerines), 가죽제 모자, 모자, 관(冠), 챙달린 모자, 야구모자, 골프용 모자, 니트모자, 어린이용 모자, 테없는 모자, 남바위, 양모제 모자, 의류용 후드(두건), 종이 모자, 베레모, 터번, 나이트캡, 모자챙(Sun visors), 톱햇(Top hat), 모자틀, 사교관(司敎冠), 모피 모자, 망건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고무제 완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모빌 완구, 완구용 블록, 장난감 곰, 장난감용 가면, 포제(布製) 완구, 공기팽창식 완구, 마네킹 인형, 어린이용 걸음마차, 완구용 가구, 완구용 하모니카, 축소모형차량, 눈없는 달마인형, 모형승용차, 시계태엽장치 장난감, 인형, 공기팽창식 얇은 고무제 완구, 비눗방울(장난감), 인형용 방, 장난감 권총, 축제용 마스크, 마스크트인형, 박제인형 및 동물, 완구악기, 인형집, 플라스틱제 완구, 어린이용 흔들목마, 완구용 인형, 꼭두각시인형[마리오네트인형], 인형용 우유병, 건축완구세트, 금속제 완구, 인형용 피복, 인형집용 가구, 장난감 공기권총, 딸랑이장난감, 박제인형, 어린이용 삼륜차, 완구용 실로폰, 완구용 집, 완구용 피아노, 인형옷, 지제(紙製) 완구, 완구, 목수공구 완구세트, 연극용 가면, 완구시계, 인형용 슈즈, 장난감 차, 전통서양식 인형, 박제완구, 세트완구, 원격조종 장난감 차, 목제(木製) 완구, 블록쌓기(장난감), 완구용 공, 완구용 너관, 완구용 원반, 완구용 철금(鐵琴), 팽이, 장난감, 등재 완구, 손

가락인형[퍼핏], 완구용 스쿠터, 장난감 미끄럼대, 레버액션 장난감, 어린이용 모형승  
 용차, 장난감 가면, 인형용 모자, 인형침대, 장난감권총용 뇌관, 오락용구, 과자가 들  
 어있는 크리스마스 폭죽,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당구큐용 초크, 도미노놀이용구, 보  
 드게임, 실내축구게임용 테이블, 코작(Cosaques), 다트, 당구공, 마술용구, 마작용구,  
 색종이조각(놀이용품), 전자표적, 체스판, 게임용품, 고리게임용구, 자동슬롯머신, 파티  
 선물용 깜짝상자, 피나타(Pinatas), 바둑알, 빙고카드, 당구용 점수판, 연얼레, 주사위,  
 바둑판, 회전식 추첨기, LCD가 있는 포켓용 게임용구, 연, 장기짜, 장기판, 체스용구,  
 게임용 원반계수기, 놀이용 구슬, 당구큐팁, 룰렛 휠(Roulette wheels), 화투, 동전작동식  
 당구대, 수영장(놀이용품), 트럼프, 깜짝상자, 만화경, 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 주사위용 컵, 체스짜, 컴퓨터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 퍼즐용 그림조각, 당구큐, 던지기놀이용 고리, 실내놀이용품, 체커판, 서양주사위  
 놀이구, 자동식 오락기구(동전작동식과 TV수상기전용사용기구는 제외), 당구대용 쿠션,  
 빠짱꼬기구, 체커용구, 퍼즐, 풍선, 골패(骨牌), 구슬, 당구대, 동전작동식 오락기구,  
 편자던지기게임기구, 경기용 공의 바람주머니, 골프채용 가방, 구기경기용 네트, 남성용  
 복부보호대(스포츠용품), 라켓, 런닝머신(Running machine), 서핑보드용 가방, 스포츠용  
 작살총, 야구배트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야구용 베이스, 역기용 장갑, 운동기계, 운  
 동용 고정식 자전거, 운동용 공, 육상경기용 해머, 탁구공, 테니스네트, 패러글라이더,  
 하키스틱, 스포츠용구, 검도용 마스크[검도용 면], 골프용 잔디관리기, 등산용 안전장착대  
 (安全装着帶), 볼링용 볼, 스쿼시, 스타팅 블록, 육상경기용 바, 육상경기용 투창, 검도용  
 동구[검도용 가슴받이], 도약판, 복싱용 미트, 서핑보드, 스노우 글로브,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키용 바닥덮개, 스키용 장갑, 스포츠도구용 화살통 형태의 케이스, 안마, 야구용

배트, 양궁용구, 운동용 넷트, 운동용 승강그물, 탁구라켓케이스, 테니스공케이스, 트램폴린(Trampoline), 화살통, 검도용 장갑, 경기용 원반, 골프채, 배팅글러브, 스포츠용 정강이보호대, 클레이사격용 접시표적, 테니스공, 평균대, 포일(펜싱용 칼), 호흡관 [잠수용 스노클], 덤벨샤프트, 릴레이 바통, 보디빌딩기구,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봅슬레이, 스윙핀, 스케이트보드, 스키용 덮개, 야구공, 야구글러브, 윈드서핑용 세일보드, 체조용구,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라켓, 펜싱장갑, 하키펙, 농구공, 바디 보드, 복싱용 샌드백, 빙상스케이트, 사냥용 위장막(스포츠용품), 송구공, 수영용 오리발, 스키 및 서프 보드용 가방, 스키날, 스키용 가방, 스키케이스, 스포츠용 썰매, 시소(운동기구), 아이스케이트 날,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미트, 양궁, 익스텐드, 운동용 승강로프, 운동용 장갑, 탁구대, 고무제 공, 골프장갑, 권투장갑, 바벨, 복싱용 마우스피스, 볼링용 글러브, 사이클용 장갑, 소프트 테니스공, 스키폴, 운동용 흉부신장기, 윈드서핑용 돛 및 세일보드, 잠수용 오리발, 페인트총용 탄약, 경기용 배트, 라켓용 장갑, 복싱용 글러브, 스키용 스크레이퍼, 스포츠용 새총(Sling shots), 운동선수용 로진(rosin), 운동용 스타팅 블록, 줄넘기용 줄, 체조용 뿔뜯, 풋볼 또는 축구공, 활시위, 경기용 공, 과녁, 무릎보호대, 벨트바이브레이터(Belt vibrator), 서포터, 서핑 보드용 끈, 소형요트용 돛대, 수영용 보드, 아령, 알파인스키용 바인딩, 육상경기용 포환, 철봉, 클레이사격용 접시사출장치, 투창, 하키킥, 허들, 경기용 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라켓 및 라켓줄, 롤러스케이트, 배구공, 복근대, 볼링백, 야구용 흉부보호대, 카리베나, 캐디백, 크리켓가방, 탁구넷트, 흉부신장기, 경기용 피스톨, 복싱연습용 펀치볼, 소형요트용 하니스(harness), 워터슬라이드, 체조용 링, 체조용 안마, 크리켓채, 행글라이더, 고무제 야구공, 볼링장치 및 기계,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소프트볼공,

수상스포츠용 보드, 스키용 썰, 스포츠용 미끄럼대, 에페(펜싱용 칼), 치닝바(Chinning bar),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케이스, 경기용 작은공, 골프공, 궁도용 팔찌, 라켓줄, 목마(스포츠용품), 배드민턴공, 배턴, 서핑스키, 스노우 슈즈, 스노우보드용 바인딩, 스케이트날이 붙은 스케이트화, 스키화 고정장치, 스포츠용 조립식 풀, 체조용 도약판, 탁구라켓, 테니스네트 및 기둥, 피팅연습용 매트, 평행봉, 활, 검도용 목도, 검도용 죽도, 골프용 점수판, 골프티, 볼링핀, 스키, 신체재활기구, 육상경기용 서클, 인공등반벽, 장대높이뛰기용 막대, 테니스용 볼 투척기, 하키장갑, 화살, 흉부보호대, 골프가방, 골프채 헤드커버, 구좌, 비의료용 로잉머신(Rowing machine), 스키삭(Sac), 스프링보드, 아이스스케이트, 양궁용 표적, 역도용 벨트,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롤러, 체조용 철봉, 펜싱용 보호대, 펜싱용 사브르, 펜싱용 장갑, 하키용 보호대, 홈베이스, 골프채 헤드, 골프채용 커버, 그네(스포츠용품), 라켓용 보호덮개,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총, 수구공, 수상스키, 스키바인딩용 커버, 스키스틱, 원반, 체력단련용 벤치, 축구공, 편치볼, 펜싱용 마스크, 펜싱용 칼, 낚시그물, 입질표시센서, 낚시용구, 낚시바늘, 낚시용구케이스, 낚시릴,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줄용 야잠사(野蠶絲), 견지, 낚시 받침대, 낚시대 케이스, 낚시도구, 낚시대, 낚시용 갈고리, 낚시찌, 낚시봉, 낚시줄, 뜰채, 입질표시기,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크릴(Creels)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냉동된 완두콩, 냉동콩,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당근, 냉동생강, 냉동오이, 냉동머위, 냉동버섯, 냉동인삼, 냉동죽순, 냉동고사리, 냉동양파, 냉동가지, 냉동배추,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마늘, 과일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가공된 올리브튀레, 마멀레이드, 보존처리한 레몬,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포도, 설탕을 입힌 과일, 잼, 건포도,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한 멜론, 양념된 피

클, 채소수프, 감자 프레이크(flake), 건조된 과일[건조과일], 껍질 벗긴 토마토, 보존처리  
 한 딸기,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밤, 분말아몬드,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채소샐  
 러드, 통조림토마토, 피카릴리(Piccalilli), 깍두기, 단무지, 보존처리한 복숭아, 감자튀  
 김, 건시[꽃감],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된 양파, 요리된 채  
 소, 절임 오이, 코코넛분말,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소금에 절인 과  
 일, 요리용 토마토주스, 과일껍질, 과일칩{식품}, 오가리(건조한 채소), 채소튀레, 토마  
 토튀레(Puree), 포테이토칩{식품}, 건조된 과일믹스, 김치, 보존처리된 버섯{냉동한 것  
 은 제외}, 보존처리한 바나나, 채소수프용 조제품, 크로켓, 튀김감자, 보존처리한 밀  
 감, 장아찌, 통조림 또는 병조림채소, 가공된 인삼, 과육, 코코넛버터, 보존처리한 과  
 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소금에 절인 양배추, 코코아버터, 과일샐러드, 동치미, 보존처리  
 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한 은행, 스투요리된(Stewed) 과일, 올리브 페이스  
 트, 크랜베리(Cranberry) 소스, 피넛버터, 건조된 채소[건조채소], 발효채소식품[김  
 치],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호두, 타이니(Tahini), 피클, 건조된 코  
 코넛,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대추야자열매, 보존처리된 올리브, 사과튀레(Apple p  
 uree), 통조림된 과일, 가공된 호두, 건조무화과,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리한 배,  
 설탕에 절인 과일, 초콜릿넛버터, 토마토엑기스, 통조림된 채소, 과일 및 채소샐러드, 과  
 일젤리, 보존처리한 대추, 생강잼, 포테이토스틱,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통조림올리브,  
 요리용 채소주스, 두유, 두유(우유대용품), 농(濃)두부, 두부가공식품, 두부, 보존처리된  
 완두콩,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식용대두, 휴머스[병아리콩 페이스트], 보존처  
 리된 콩, 보존처리한 두류,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가공한 땅콩,  
 냉동한 과실, 냉동한 과일, 식육, 닭고기, 돼지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소고기, 양고

기, 가금(家禽)(살아있지 않은 것), 토끼고기, 꿩고기, 엽조수(살아있지 않은 것), 오리  
 고기, 말고기, 건조란,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달걀노른자위, 식용란(卵), 난(卵)가공  
 식품, 분말달걀, 동결란, 달걀흰자위, 식용 달걀흰자위, 레닛(Rennet), 농축부용, 건조된  
 고기, 고기엑기스, 농축브로쓰, 비프스테이크, 육류내장품,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  
 으로 만든 페이스트, 소 위(胃), 식용 제비등지, 가공된 고기, 으깬 소시지, 햄, 간(肝),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식용 젤라틴, 통조림된 고기[통조림육], 보존  
 처리된 고기, 육류가공식품, 부용(Bouillon), 가공한 식육, 소시지, 쇠고기조각, 식용  
 골수, 돈가스, 소금에 절인 고기, 조리된 통조림고기, 가공된 쇠고기, 식용 단백질, 육  
 포, 부용제조제, 샤르꾸테리(Charcuterie), 튀긴 고기, 고기젤리, 베이컨, 햄버거용 고  
 기, 발효유, 케피르(우유음료), 우유 단백질, 쿠미스(우유음료), 마시는 요구르트, 분  
 유(유아용은 제외), 사와(Sour), 요구르트, 콘덴스트밀크, 숙성치즈, 팽팽한 치즈, 땅콩  
 을 함유한 우유음료, 우유크림분말, 유산균음료, 유(乳)가공식품, 우유크림, 신선한 미  
 숙성치즈, 유제품, 치즈 스프레드, 연유, 연질하얀치즈, 요구르트 음료, 우유를 주성분  
 으로한 우유음료, 생크림, 양유, 하얀 치즈,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유장(乳漿), 몰드  
 숙성치즈, 산양유, 연질치즈, 응유(凝乳), 치즈가루, 우유,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식용 카세인, 양치즈, 유산음료, 치즈, 휘핑크림(Whipped cream), 버터, 버터크림, 식용  
 유지(油脂), 쌀겨유, 채소유지, 해바라기유, 유지가공식품, 식용 골유, 식용 라드(Lard), 식  
 용유, 혼합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유채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판유, 식용 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 지방, 식용 팜핵유, 식용 평지기름, 코코넛지방, 식용 소맥유, 식용  
 펙틴(Pectin),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올리브유, 식용 참기름, 식용 면실유, 식용 분말  
 유지, 식용 우지(牛脂), 동물성 유지, 식용 고래기름[식용 경지], 식용 콩기름, 식용지방

제조용 지방질물질, 옥수수기름, 참기름, 쇼트닝, 팜유, 식용 라놀린, 골유, 식용 어유 (魚油), 식용 해바라기유, 코코넛기름, 코코넛유지, 식용 팜유, 식용 동물기름, 식용 아 마인유, 마가린,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통조림달팽이, 벌레가공식품, 식용 번데기, 조리된 달팽이, 식용 달팽이알, 굴{살아있지 않은 것}, 콩치{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 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챙 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 지 않은 것},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광어{살아있지 않은 것}, 성게{살아있지 않은 것},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청새 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 있 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게{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 알, 멸치젓,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돔{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살아있 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성게알젓,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고 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생선,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황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 {살아있지 않은 것}, 굴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젓,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연어알,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생선,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송어{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식품용 한천,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모자반{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가공한 감태, 파래{가공한 것}, 청각{가공한 것}, 해태{가공한 것},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다시마{가공한 것}, 식용 알긴산염, 구운 김, 해초가공식품, 가공한 꼬시레기, 식용 부레풀, 보존처리된 생선, 생선묵, 통조림된 생선, 식용 어분(魚粉), 보존처리한 어패류, 생선을 저민 조각, 생선가공식품, 건제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생선소시지,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훈제어패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 메밀가루, 식용 세몰리나, 식용 사고(Sago),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으깬 귀리, 식용 보리가루, 식용 타피오카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탈곡한 귀리, 밀가루, 식용 감자가루, 쌀가루, 으깬 보리, 찹쌀만두제조용 가루,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전분, 보리가루, 식용 갈분(葛粉), 콩가루, 뮤즐리, 빵은 밀, 식용 율무가루, 식용 쌀가루, 옥수수가루, 탈곡한 쌀, 감자가루, 부침용 곡물가루, 탈곡한 보리, 사고(Sago), 타피오카,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세몰리나(Semolina), 건조조리된 밥,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제품,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곡물로 만든 칩(Chips),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초밥, 핫도그, 냉면,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타코(Tacos),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귀리프레이크, 샌드위치, 스파게



티, 파스타(Pasta), 귀리플레이크, 수프용 파스타, 인조미, 전, 가공한 곡물, 곡물소시지, 곡분제 페이스트, 만두, 우동, 인스턴트 소바국수, 마카로니, 신선한 피자, 패스티(Pasty), 식용 글루텐,オート밀, 교자용 파스타묵음, 국수, 라면, 면류, 버미첼리(Vermicelli), 영양파스타, 피자, 빈대떡, 인스턴트 중국식 국수, 타블레(Tabbouleh), 만두피, 볶은 옥수수,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식용オート밀, 콘플레이크, 키쉬(Quiches), 건조된 밀글루텐, 곡분제 식품, 라비올리(Ravioli), 물계 탄 옥수수,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 카넬로니, 건조된 파스타, 곡물수프, 곡분제품, 소면국수, 신선한 파스타, 조리되지 않은 마카로니, 토스트, 도시락밥, 밀기울,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요리되지 않은 당면, 인스턴트 우동, 쿠스쿠스(Couscous), 베이킹파우더, 메주, 이스트엑기스, 누룩, 베이킹 소다[요리용 중탄산소다], 비의료용 이스트정제,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 이스트엑기스, 식품용 이스트, 페이스트용 효소, 식용 맥아, 식용 맥아엑기스, 감초과자, 막대형 감초과자, 식용 캔디, 양갱, 파테, 과일빙과, 과일젤리과자, 디저트용 푸딩, 케이크의 식용장 식품, 누가(Nougat), 눈갈사탕, 식빵용 가루반죽, 타트(Tarts), 아이스크림, 약과, 와플(Waffles), 인스턴트 도넛믹스, 캐러멜캔디, 과자, 생강빵, 쇼트브레드, 스프링 롤(Spring rolls), 식빵, 잼빵,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사탕과자, 초콜릿바, 콩이 들어있는 빵, 크림빵, 퍼프드라이스, 햄버거용 빵, 건빵, 도넛, 둥근 빵, 롤리팝, 비의료용 추잉껌, 아몬드과자, 카스텔라빵, 통밀가루빵,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핫케이크, 캔디, 바바로아, 건(乾)과자, 과자용 가루,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슈크림, 식용 웨이퍼스, 카스타드, 태피(Taffy), 단팥빵, 롤빵, 마지펜(Marzipan), 무발효빵, 사탕과자[캔디],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설탕입힌 커피콩, 속이 채워진 초콜릿, 아몬드케이크, 젤리과자, 코코아캔디, 팬케이크, 호떡, 고기파이, 다식, 드롭스, 땅콩과자,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껍질, 버터

비스킷, 봉봉과자, 사탕조림, 콘칩, 쿠키, 페티스포(Petits fours), 편강, 할바(Halvah), 과일케이크, 마시멜로, 셔벗, 식용 빙과용 파우더, 케이크페이스트, 토르티야(Tortillas), 팝콘, 맥아비스킷, 빙과용 셔벗, 산자, 웨이퍼스, 초콜릿,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 식용 과자, 러스크(Rusk), 로젠지과자, 머핀, 비스킷, 빵가루, 아이스크림 콘, 전과, 초콜릿캔디, 케이크, 케이크반죽,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옛, 크래커, 프랄린(Pralines), 빵, 강정, 껌, 마카롱(Macaroons), 식용 과일빙과, 쌀푸딩, 아이스캔디[얼음사탕], 아이스케이크, 인스턴트 푸딩믹스, 파이, 패스틸(Pastilles), 페이스트리(Pastries), 푸딩, 박하사탕과자, 아이스크림믹스, 인스턴트 팬케이크 믹스, 초콜릿페이스트, 풍당(과자), 설탕, 분말엿, 과당(果糖), 굵은 정백당, 봉밀, 식용 포도당, 식용 당(糖)류, 꿀, 맥아당, 백설탕, 식용 봉랍(蜂蠟), 당밀시럽, 각설탕, 대용꿀, 분말물엿, 골덴시럽, 물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식용 당밀, 천연감미료, 떡, 장(醬)류, 청국장, 자장, 간장, 된장, 춘장, 고추장, 핵산조미료,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화학조미료, 샐러드소스, 토마토소스, 식초, 샐러드드레싱, 조미용 소스, 프렌치드레싱, 마리네이드, 소스, 조미료용 소스, 케첩, 마요네즈, 맥아식초, 향을 낸 식초, 과일향미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향신료),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겨자가루, 깨소금, 바닐라대용 바닐린, 산초가루(향신료), 스타아니스 열매(향신료), 그레이비(Gravies), 생강(향신료), 양념용 수프, 조미료용 잡초, 커피향미료, 아몬드향미료, 차우차우(향신료), 처트니(Chutneys), 치즈용 향미료, 버섯가루(향신료), 식탁용 깨소금, 정향(丁香)가루, 후추, 아니스열매(향신료), 케이크용 향미료,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생강가루(향신료), 수프용 향미료, 정향(丁香), 바닐라(향신료), 향미료{정유는 제외}, 계피가루, 후추가루(향신료), 버터용 향미료, 제빵용 양념, 과자용 박하, 마늘가루, 올스파이스(Allspice), 향신료, 겨자(향신료),

계피(향신료), 사프론(Saffron), 식품용 향료, 육계가루, 냉이가루, 식품향미료용 과일페  
 이스트, 카레페이스트, 렐리쉬(향신료), 식용 심황(향신료), 식품용 에센스(정유는 제  
 외), 카레가루, 향미료용 바닐라, 너츠멕[육두구], 차용 향미료, 셀러리(Celery)소금, 식  
 용 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맛소금, 요리용 해수, 요리용 소금, 인삼차, 비약제용 우려  
 낸 즙, 홍차, 오가피차, 라임차, 차(茶), 보리차, 아이스티, 오통차, 과일차, 녹차, 셀비  
 어잎차, 석창포차, 구기자차, 대용차, 맥엽차, 차의 잎, 원기차, 밀크커피음료, 커피,  
 코코아,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코코아음료, 커피음료, 볶은 커피콩, 우유함유 초코  
 렛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 커피, 치커리(커피대용품), 가공된  
 커피, 밀크초콜릿, 대용커피, 코코아제품, 분말 커피콩, 천연커피원두, 인조커피, 코코  
 아스프레드, 초콜릿음료,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음식물용 얼음, 천연 또  
 는 인공얼음, 식용 얼음, 얼음, 얼음조각, 생크림용 안정제, 가정용 식육연화제, 식용빙  
 과용 응고제, 소시지용 결착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요리용 농화제, 휘핑크림용 안정제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미가공 두류,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보리, 생잠두  
 콩, 미가공 기장, 미가공 수수, 미가공 꽃가루[미가공 화분], 로커스트콩(신선한 것), 생렌  
 즈콩, 미가공 곡물, 강낭콩, 배아, 미가공 귀리, 생완두콩, 미가공 조, 생콩, 생옥수수,  
 생팥, 호밀, 미가공 벼, 미가공 참깨, 벼, 미가공 들깨, 미가공 피, 부추(신선한 것), 생  
 버섯, 치커리뿌리(신선한 것), 호박(신선한 것), 생감자, 신선한 재배허브, 대황[신선한  
 것], 상치(신선한 것), 오이(신선한 것), 신선한 송로버섯, 신선한 양파, 신선한 채소, 셀러  
 드용 치커리(신선한 것), 식용 뿌리채소(신선한 것), 사탕수수씨꺼기, 신선한 사탕무, 사  
 탕무, 사탕수수, 코프라(Copra),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동물용 식품, 사료용 콩가루,  
 애완동물용 먹이, 사료용 곡물, 사료용 어분(魚粉), 가금용 빵은 밀, 가축용 평지씨찌

끼기, 고양이사료, 동물사료용 녹말덩어리, 동물용 씹는 과자[동물용 츄],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용 곡물부산물, 사료용 증류찌꺼기, 새먹이용 오징어뼈, 가축비육용 삶은 사료, 개사육용 사료, 동물사료용 간장찌꺼기, 동물사료용 향미료, 비의료용 동물사료용 영양첨가제, 비의료용 사료첨가물, 사료용 싸라기, 애완동물용 사료, 가축사료, 동물사료용 천연버, 애완동물용 음료, 대두박(大豆粕)사료, 비육용 사료, 새먹이, 단미사료, 사료용 아마부스러기, 사료, 동물용 땅콩가루, 사료용 단백질, 사료용 증류잔재물, 가축용 비육제, 가축용 소금, 동물용 효모, 사료용 깻묵, 맥주찌꺼기, 합성동물사료, 가금산란용 조합제, 금붕어사료, 동물용 비육제, 동물용 음료, 마초(말먹이), 사료용 겨, 사료용 밀짚, 사료용 알가로빌라(Algarovilla), 생선찌꺼기사료, 개사료용 비스킷, 개용 소화가능한 씹는 뼈, 사료용 포도찌꺼기, 쌀겨사료, 강화사료, 동물용 땅콩찌꺼기, 사료향미제, 양어사료, 혼합동물사료, 가축용 옥수수찌꺼기, 사료용 밀기울, 동물용 곡물가루, 사료용 건초, 사료용 석회, 종자(種子), 농산용 구근(球根), 묘종(苗種), 우루쉬나무 종자, 버섯균사, 미가공 곡물종자, 사과나무 종자, 솔방울, 꽃종자, 구근(球根), 원예용 구근(球根), 원예용 종자, 채유용(採油用) 종자, 식물종자, 식물육성용 배종(胚種), 종자류, 곡물종자, 꽃구근, 농작물종자, 파종용 종자,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과일종자, 농업용 종자 및 균사, 풀 종자, 포도{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키위프루트(Kiwifruit), 생밤, 수박{신선한 것}, 오렌지{신선한 것}, 노간주나무열매{신선한 것}, 신선한 페이조아(Feijoa), 레몬{신선한 것}, 잣{신선한 것}, 파인애플{신선한 것}, 생올리브, 자두{신선한 것}, 감귤{신선한 것}, 신선한 식용 소과실(berries), 신선한 과실, 개암{신선한 것}, 생포도, 아몬드{신선한 것}, 올리브{신선한 것}, 콜라열매{신선한 것}, 자몽{신선한 것}, 참외{신선한 것}, 호두{신선한 것}, 앵두{신선한 것}, 은행{신선한 것}, 파파야{신선한 것}, 코코넛{신선한 것}, 견과

{신선한 것}, 생화(生花), 종려나무, 묘목, 살아있는 장미나무, 살아있는 후추나무, 나무, 사람 또는 동물용 잡초, 모, 포도나무,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잔디, 풀, 관목, 분재,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장미나무, 목초, 췌기풀, 천연잔디, 홉(Hops), 홉열매,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살아있는 엽조수(獵鳥獸), 살아있는 새, 사육용 가금, 살아있는 조(鳥)류, 살아있는 병아리, 동물원동물, 살아있는 가금,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가축, 사육용 동물, 살아있는 동물, 산란용 암탉, 사육용 가축, 종축용 가축, 살아있는 지렁이, 살아있는 굼벵이, 살아있는 벌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홍합, 생 갈치, 생 미꾸라지, 생 붕어, 생 새우, 살아있는 바다가재, 생 가오리, 생 광어, 생 굴조개, 생 대합, 생 밴댕이, 살아있는 잉어, 생 넙치, 생 농어, 살아있는 갑각류, 살아있는 가재, 살아있는 대합, 생 병어, 생 상어, 생 성게, 생보리멸, 생 고래, 생 콩치, 생 대구, 생 돛, 생 문어, 살아있는 어패류, 살아있는 왕바다가재, 생 가자미, 생 녹새치, 살아있는 굴, 살아있는 대구, 생 낙지, 생 방어, 생 복어, 생 볼락, 살아있는 해삼, 생 멸치, 생 굴, 생 도미, 생 바지락조개, 생 뱀장어, 어란(魚卵){살아있는 것}, 생 자라, 생 고등어, 생 삼치, 생 어란(魚卵), 생 은어, 살아있는 붕장어, 살아있는 조개, 생 가물치, 생 게, 활어(活魚), 신선한 해초,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신선한 것}, 신선한 꼬시레기, 신선한 톳,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파래,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우뚝가사리, 신선한 미역, 신선한 청각,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모자반,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애완동물용 향처리 모래, 깔집용 토탄, 깔집용 애완동물 모래종이, 깔집용 애완동물 향처리 모래, 뿌리뎛개용 짚, 깔짚, 식물보온용 짚, 동물용 깔짚, 나무줄기, 제재전(製材前) 목재, 껍질벗긴 목재, 통나무, 코코넛껍질, 미가공 나무껍질, 야자나무의 잎, 미가공 코르크, 종려나무잎, 나무펠프제조용 나무조각,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낚시용

떡밥,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장식용 건조식물, 생화(生花) 화환, 드라이플라워, 혼상용 생화화환, 누에씨, 잠종(蠶種), 누에알, 누에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레몬스퀴시, 음료용 인삼 엑기스, 사과주스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사이다, 크바스(비알콜음료), 땅콩즙음료, 오렌지주스,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비알콜성 과일넥타, 음료용 과실분말, 진저에일(Ginger ale), 비알콜성 아페리티프(Aperitifs), 셀처탄산수(Seltzer water), 음료용 셔벗, 음료용 시럽,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제조용 에센스, 밀감수, 비알콜카테일음료, 아몬드즙음료, 탄산수, 과일주스, 냉동 과일음료,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음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아몬드시럽, 유장(乳漿)음료, 인삼주스(음료), 과라나음료, 파인애플주스, 포도액, 발포성 음료용 재료, 소다음료, 음료용 인삼분말, 소다수, 청량 음료,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비알콜성 사과즙, 비알콜성 음료, 사과주스, 아이소토닉음료, 콜라시럽, 포도주스, 감주(음료), 과일맛음료, 음료수제조제, 탄산수제조제, 토마토주스, 토마토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리튬염수, 무탄산수, 광천수 제조제, 광천수, 생수, 음료용 물,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샘물, 식탁용 미네랄워터, 에일(맥주), 맥아즙, 리큐르제조제, 합성맥주, 라거비어, 스타우트, 유사맥주, 맥주, 진저비어, 맥주용 맥아즙, 맥아맥주, 흑맥주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청주, 쌀로 빚은 술, 법주, 합성청주, 인삼주, 약주, 탁주, 소주, 사과주, 막포도주, 머루주, 식탁용 포도주, 커피주, 큐라소(Curacao), 매실주, 와인 쿨러, 칵테일, 딸기주, 알콜에센스, 배술, 브랜디(brandy), 포도주, 아니스(Anise) 술, 알콜성 과일엑기스, 증류주, 버찌주, 아니스 리큐어, 알콜엑기스, 유자주, 스위트와인,

알콜함유 과일음료, 베르뭇, 보드카, 발포성 포도주, 비터즈(Bitters), 아페리티프(Aperitifs) 술, 리큐어(Liqueurs), 발포성 과실주, 아라크(Arak) 술, 위스키, 진(Gin), 샴페인, 아페리티프(Aperitifs), 우유함유 알콜각데일, 천연발포성 포도주, 럼주, 압상트, 독사주, 약용주(藥用酒), 벌꿀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고량주, 중국식 백주, 박하주, 노주(老酒), 보명주(保命酒), 약미주, 호골주, 오가피주, 송엽주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배너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판촉대행업, 약제 판매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사진복사업, 가격비교서비스업, 사업관리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소매업,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소매업, 가방/지갑 판매알선업, 겐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대행업, 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주화/구리토큰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보석제 액세서리 소매업, 그림물감 소매업, 낚시바구니/낚시의자 소매업, 낚시용 떡밥/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소매업, 냉동한 과실 소매업, 냉동한 두류 소매업, 냉동한 채소 소매업, 도자기 판매대행업, 도정(搗精)한 곡물/식용 곡분/식용 전분 소매업, 두류가공식품(두부/두부가공식품은 제외)/보존처리한 두류 소매업, 두부/두부가공식품 소매업, 떡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목도리/넥타이/술/스카프/방한용귀마개/양말/스타킹/발싸개/방한용 장갑/유아용

식물체 기저귀 소매업, 목주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는 벌레 소매업,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는 짐승/살아있는 조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벌레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서화 소매업, 소주/약주/청주/인삼주/법주/탁주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식용 소금 소매업, 식용란/난 가공식품 소매업, 식용유지/유지가공식품 소매업, 식육 도매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품 향미용 정유 소매업, 신발 판매대행업, 신선한 과일 소매업, 신선한 채소 소매업, 신선한 해초 소매업, 악기 판매대행업, 안경 판매대행업,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애완동물용 쿠션/애완동물용 침대 소매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소매업, 액자 소매업, 완구 판매대행업, 요리용 채소주스 소매업, 분유 소매업,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소매업,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종이제 턱받이 소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자응용기기/컴퓨터 소프트웨어/전자관 소매업, 종이용지 소매업, 침구 판매업, 커피/코코아 판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향료 소매업, 향신료 소매업,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사무처리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복사업, 워드프로세싱 및 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경매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팬티/브라 판매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마사지업, 문신업, 미용상담업,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사우나서비스업, 손톱미용업, 안마소업, 안마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이미용업, 이용업, 인공선 텐업, 일광욕서비스업, 입욕시설제공업, 증기탕업, 지압업, 한증막업, 헬쓰스파서비스



스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 꽃꽂이업, 동물손질업, 물물교환소개업, 심리검사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애완동물 목욕탕업,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손질업, 잔디관리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디자인업, 조경디자인업, 조경업, 화환제작업. 끝.

[별지 3]

**사용상품의 표시**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달력, 입장티켓, 지도책, 비자기식 신용카드, 종이제 포스터, 팜플렛, 그림엽서, 부적(인쇄물), 인쇄된 시간표, 초대장, 티켓, 그래픽인쇄물, 한장씩 뜯어내는 달력, 비자기식 전철표, 양재용 옷본(패턴), 연하장, 우표, 포스터, 일기장, 지도, 비자기식 전화카드, 옷본(편물용 목수단 옷본은 제외), 시간계획표, 인쇄된 서식용지, 도표, 복사용 필체견본, 인쇄된 달력, 광고용 팜플렛, 트레이딩카드, 멜로디연하장, 수표, 엽서, 도로지도, 명함, 카탈로그, 설계도(인쇄물), 승차권, 카드(인쇄물), 잡지용용지, 학교용 습자 서적, 연감(年鑑), 로자리오 기도서[목주], 매뉴얼[핸드북], 음악교재, 교재{기구는 제외}, 노래책, 정기간행잡지, 연재만화, 전화번호부, 출판물, 핸드북, 회보, 만화책, 일간신문, 백과사전, 소책자, 주소성명록, 서적, 악보, 습자 또는 제도용 책, 학습지, 신간서적등의 내용견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핸드북[매뉴얼], 그림책, 스코어북, 습자책, 주소록(인쇄물), 먹물펜, 메모블럭, 패지(野紙), 마커, 문방구용 봉인용 조성물, 볼펜용 리필제, 봉인용 스탬프, 스크랩북, 앨범, 전표(傳票), 제도용 핀, 종이리본, 펜상자, 필기구, 가공된 먹지, 글자지우개판, 도장용 인주(印朱), 글자지우개용품, 단어암기구, 문방구용 색인카드, 볼펜용 볼, 사무용 골무, 사무용 급습구(給濕具), 압침, 일부인(日附印), 트레이싱용 패턴, 트레이싱천, 펜 거치대, 필기판, 관리표, 등사원지용 용기, 서류용 마커, 석판인쇄용 분필, 석필(石筆), 수정용 연필, 스탬프대, 심을 넣고 뺄 수 있는 연필, 지철구, 직각자, 카본페이퍼{문방구}, 펜담개, 펜케이스, 화가용 팔걸치는 받침, 고무스탬프, 곤충채집상자, 만년필, 먹, 메모패드, 미술용 수채화접시, 색인, 인장(印章), 제본용 끈, 펜 스탠드, 나선철로 제본된 공책, 도장재료, 문방구용

스티커, 문방구용 커버, 분필홀더, 사무용 수정액, 자기스탬프, 제도용 압핀, 제도용 T자, 제도용구, 종이침쇠, 편지개봉기, 편지개봉용 칼, 편지지, 편지지철, 필가, 기록용 카드, 문방구용 점성고무테이프, 문방구용 풀, 베틀, 사무용 문서함(문방구), 연필깎기기계, 용전(用箋), 인주, 접착식 메모장, 제도용구세트, 종이제 그림판, 컬러연필, 학용품, 휴대용 메모지, 견출지, 금전분별용 및 계산용 정리쟁반, 금제 펜촉,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문진(文鎭), 봉함용 풀, 붓, 사무용 편치, 사무용 펜, 잉크지우개, 자기펜, 장부(帳簿), 제도용 컴퍼스, 표시용 분필, 회화 및 제도용 연필, 도장, 문방구용 접착호일, 문방구용 케이스, 분필지우개, 압지(壓紙), 역센 종이집게, 에칭용 침, 연결자(문방구), 연필깎기, 연필심홀더, 운형자, 잉크(문방구용), 제도용 트레이싱침, 제도용 펜, 제도용지, 종이봉투, 종이클립, 지갑형태의 서류폴더, 캔버스, 통지카드(문방구), 트레이싱페이퍼, 파스텔[크레용], 펜 또는 연필스탠드, 편지용 클립, 필기용 분필, 필기용 석판, 문방구용 고무풀, 복사용 지철(紙綴), 북엔드, 비전기식 스테플러[비전기식 호치키스], 사무용 종이시트, 사인펜, 사진꽂는 스탠드, 서류상자, 서류용 홀더, 석판, 스탬프용 패드, 연필심 보호용 제품, 인쇄문구가 인쇄된 편지지, 자카드식 직조기 천공카드, 제도용 자, 필판 지우개, 형광펜, 흡묵기, 고무지우개, 명함용지, 문방구용 부레풀, 문방구용 자기접착테이프, 문방구용 폴더, 봉투, 사무용 고무밴드, 사무용 바인더, 사무용 종이절단기, 사무용 클립, 사진용 앨범, 서류용 수정액, 서류철하는 기구, 잉크리본감개, 잉크병, 작은 칠판, 장서표, 종이제 나비매듭 리본, 지구의(地球儀), 펜대, 필기구상자(문방구), 회화용 이즐, 계산표, 등사용지(문방구용), 등사원지판, 루스리프식 바인더, 목탄연필, 문방구용 녹말풀, 문방구용 연필장식, 연필심, 연필장식품, 종이제 드로워 라이너, 차트, 칠판, 페이퍼클립, 펜촉, 필기구상자세트, 회화용 솔, 고무칠된 표면 급습구(給濕具), 루

스리프용지, 메모장 홀더, 문방구용 문서화일, 문방구용 봉투, 사무용 파일, 샤프펜슬, 스탬프홀더, 스티커앨범, 연필, 자기칠판, 페이퍼나이프, 문방구, 가공된 쾌지(罨紙), 골필(骨筆), 공책, 그림물감통, 대장(臺帳), 문방구용 점성고무천, 문방구용 접착제, 방안지[가공된 그래픽용지], 분필, 사무용 지우개, 서류봉투, 서류폴더, 수표장홀더, 스탬프케이스, 스테이플러 홀더, 연필홀더, 잉크스탠드, 조각판, 책받침, 칠판용 제도기구, 필기구용 잉크, 먹물, 메모지, 문방구용 패드, 사무용 풀, 사진붙이는장치(문방구), 수첩, 스케치북, 이벤트 앨범, 잉크흡수용 패드, 제도용 패드, 젤롤러펜, 칠판지우개 [분필지우개], 크레용, 편지꽃이, 필기구용 주머니, 필기용지 홀더, 회화용 팔레트, 마킹용 펜, 문방구용 인장(印章), 볼펜, 볼펜팁, 사무용 인장(印章), 사무용 철침, 사무용품 {가구는 제외}, 사진용 코너, 서류첩, 접착식 메모지, 철필[골필], 침핀, 필기구지지용 손목밴드, 필통, 필판, 분도기(分度器), 비전기식 차트 포인터, 사진부착용구(문방구), 삽화를 넣은 메모장, 제도용 직각자, 철필, 컬러펜, 클립보드, 투명화(문방구), 펜(필기구), 펜클립, 필기구스탠드, 필기용 종이패드, 해면, 사진. 끝.